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12. 15.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12. 15.

라. 상정 및 의결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5차 재정경제위원회(97. 12. 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가. 제안이유

- 현행 부천시시세감면조례는 적용시한이 1997. 12. 31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로서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전면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0. 12. 31까지로 연장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이륜차를 추가하고, 등록대상자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으로 확대(안 제2조, 제4조)
- 농어촌 주택개량 및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 안의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물을 취득 후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안 제11조)
-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분리(안 제15조, 제16조)
-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37.5%~60.8% 인상
- 중소기업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안 제22조)
-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직권감면 가능(안 제26조, 제27조)
-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안 제2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직형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면 세입은 얼마 정도 증가됩니까?	○ 10,534건에 10억 89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가.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호
의결년월일	97. 12. 27. (제57회)

제출년월일 : 97. 12. 15.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현행 부천시시세감면조례는 적용시한이 1997. 12. 31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로서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전면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0. 12. 31까지로 연장

□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이륜차를 추가하고, 등록대상자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으로 확대(안 제2조, 제4조)
- 나. 농어촌 주택개량 및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 안의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물을 취득 후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안 제11조)
- 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분리(안 제15조, 제16조)
- 라. 싼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37.5%~60.8% 인상(안 제5장)
- 마. 중소기업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안 제22조)
- 바.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직권감면 가능(안 제26조, 제27조)
- 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안 제28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정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

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정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자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정한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 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부천시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부천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서식>

부 천 시 시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7 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조세액	감면세액
감면사유	부 천 시 시 세 감 면 조 례 제 조			
부 천 시 시 세 감 면 조 례 제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 와 같 이 감 면 받 고 자 신 청 합 니 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서명)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규정하여.....이바지함을.....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거주하고.....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에우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후단 시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	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수익사업에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

현행	개정안
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생략)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제8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

현행	개정안
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 3. <u>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u> 4.~7.(생략) <신 설>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생략)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사업 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	용하는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1.~2.(현행과 같음) 3. <u>건설교통부</u> 4.~7.(현행과 같음)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u>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현행과 같음)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u>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u><u>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u>

현행	개정안
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간 면제한다. 1.~4.(생략)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 간 면제한다.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u>사용승인일까지</u>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4.(현행과 같음) ②.....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u>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u>.....

현행	개정안
법 제2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0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삭제>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율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간 재

현행	개정안
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현행	개정안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 소유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하 이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승용자동차를제외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련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현행	개정안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u>사용검사일</u>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u>사용승인서교부일</u>(단서 현행과 같음)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 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삭 제>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	<삭 제>

현행	개정안
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파세시가표금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 칸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

현행	개정안
	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제14조(궤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궤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씨씨 이하	10원	160원	
2,000씨씨 초과 2,500씨씨 이하	10원	180원	
2,500씨씨 초과 3,000씨씨 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 이하	15원	230원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현행	개정안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징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징감한다.
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부천시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 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현행	개정안
제7장 보칙 제18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제19조(감면신청 등) (생략) <신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생략) 제21조(시행규칙) (생략)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칙 <삭제>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현행과 같음)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현행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